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유 용 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1560호
- 나. 제안자 : 유 용 의원의 9명
- 다. 제안일자 : 2016년 12월 1일
- 라. 회부일자 : 2016년 12월 1일

2. 제안이유

- 자치법규인 조례는 시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형식과 내용이 명확하고 일관되어야 함. 하지만 서울시의 현행 조례 가운데 상당수가 관련법령의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일부 조문의 경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사정이 있음. 이에 '일괄개정'을 통해 자치법규의 정확성 등을 제고해 시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상위법 개정사항 미반영 등 인용조문 오류 수정(안 제2조 외)
- 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 미 준수 사항 등 개정(안 제4조 외)
- 다. 동어반복 어휘의 정비를 통한 조문 개정(안 제6조 외)

4.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윤 병 국)

가. 조례안의 개요

-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 미반영 조문을 비롯해 정비가 필요한 서울시 자치법규의 일괄개정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자

치법규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나. 자치법규 일괄개정의 의의

- 지방자치가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시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자치법규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이에 따라 자치법규의 수와 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시(이하 “시”)에는 시민의 생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489건의 다양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음.
- 하지만, 상위법령 개정 등의 사유에 따라 조례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더라도 입법기술적으로 이를 적시에 모두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이런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조례 개정 사항을 일괄해서 정비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지속적으로 있어왔고, 실제로 법제처는 자치법규 입안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발행한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서 일괄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의 개정취지가 같거나, 예산이나 행정제도의 개편에 따라 관련성이 깊은 정책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복수의 자치법규 개정안을 하나의 개정안에 포함하여 개정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괄정비 형식으로 복수의 조례를 개정하고 있으며, 시에서도 몇 차례 이와 유사한 방식의 조례 개정을 실시한 바 있음.

〈표〉 서울시 일괄조례 형식 조례 처리 현황

연 번	발의 일시	조 례 명	발의자	처리결과
1	2003. 2	서울특별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등의 정비에관한조례안	시장	가결
2	2004. 1	서울특별시관광안내소설치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시장	가결
3	2007. 10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간행물에 의한 광고계약 및 해지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시장	가결
4	2008. 4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시장	가결

5	2008. 6	서울특별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정비 조례안	의원	폐기
6	2009. 1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디지털행정 촉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시장	가결
7	2009. 12	행정서식 일괄개정을 위한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시장	가결
8	2010. 10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시장	철회
9	2011. 6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관광진흥위원회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시장	철회
10	2014. 10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계류중
11	2015. 9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의원	가결
12	2015. 12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일괄정비 조례안	의원	가결

- 시에서도 2003년 이후 모두 12회에 걸쳐 자치법규와 각종위원회를 일괄정비 형식으로 개정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며, 이 가운데 8건의 일괄정비 조례안이 가결되었음.
- 위와 같은 취지에 따라 본 조례안은 비교적 개정 내용이 단순하고 명료해 다른 상임위원회의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라고 판단되는 사항을 반영해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포함한 194건의 조례안을 일괄해서 정비하고자 함.
- 일괄정비 형식의 조례안 처리는 입법방식의 효율성과 자치법규 정비를 통한 시민의 편익 증진이라는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자칫 각 상임위원회의 의안심사권과 충돌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이 고려되어야 함.
- 따라서, 법제처가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개정취지가 동일하고 개별 상임위원회의 고유한 의안심사권한을 제한하지 않는 비교적 사소한 법령개정사항 등으로 그 한계가 명확히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빈도도 최소한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임.